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0
----------	-----

제출년월일 : 2008.06.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 개별조례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기능이 유사한 안산시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안산시 장학금 심의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금액을 각급학교의 교육여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에서 일부 또는 전체로 확대함(안 제1조).
- 보조사업의 범위에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과 환경개선을 추가함(안 제2조).
- 기능이 유사한 2개 위원회를 "안산시 교육발전 위원회"로 통·폐합하고 교육 경비보조 운영에 관한 사항, 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 개정조례안 : 별 첨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08. 5. 7. ~ 5. 27.(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교육관련 위원회 통·폐합 운영에 따른 관련조례 개정계획
-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로 하고, “경비의 일부” 를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며, “예산지원 등” 을 “예산지원과 우수학생 육성 등 교육발전”으로 한다.

제2조 중 “각 호의 1과”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하고,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 중 “기타” 를 “그 밖에”로 한다.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제5호 중 “기타” 를 “그 밖에”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의 조명 “(심의위원회 회부)” 를 “(위원회 회부)”로 하고, 본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제6조에 따른 안산시 교육발전 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 조명 “(심의위원회)” 를 “(위원회)”로 하고, 본문 중 “안산시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를 “안산시 교육발전 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9인”을 “15인 이내”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의견을 갖춘 인사 2인으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를 “도교육위원회위원 1인,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의견을 갖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한다.

제9조의 조명 “(간사)” 를 “(간사·서기)”로 하고, 본문 중 “간사 1인을 두되 업무주관과장이 된다.” 를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주관과장이, 서기는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로 한다.

제10조의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삭제하며, 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로 한다.

1. 교육경비보조 운영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제4항 중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제12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폐지 등) 이 조례 시행이전에 구성된 안산시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는 폐지되고 위촉된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소관 실·과		평생교육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평생교육과장 이 만 균
	담당·팀장 직위·성명	교육지원담당 허 진
	담당자 성명·전화	윤 총 오 (행정 345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u>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u> 제11조제6항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 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 ----- -----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 ----- ----- 예산지원과 우수학생 육성 등 교육발전 -----.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 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 2. (생략) <u><신설></u>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 ----- ----- 각 호의 어느 하나와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 개선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생략)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제4조 (보조사업의 신청등) ① (생략) 1. ~ 4. (생략)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보조사업의 신청등)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② ----- 제1항에 따라 ----- ----- ----- ----- ----- ----- ③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1. ~ 4. (생략)</p> <p>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5조 (<u>심의위원회 회부</u>)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u>심의위원회</u>에 회부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제6조 (<u>심의위원회</u>)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적정하고 균형있는 지원을 위하여 <u>안산시 교육 경비보조 심의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u>9인</u>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p> <p>② (생략)</p> <p>③ 위원은 시관계국장 2인, 시의회의원 3인, 관할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국장급 공무원 1인,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의견을 갖춘 인사 2인으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p> <p>제9조 (<u>간사</u>)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업무주관과장이 된다.</p> <p>제1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경비보조 기준액 설정 2. 교육경비보조 사업심의 3.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p>제11조 (회의) ① ~ ③ (생략)</p> <p>④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u>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u>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5. 그 밖에 -----</p> <p>제5조 (<u>위원회 회부</u>) ----- <u>제4조에 따른</u> ----- <u>제6조에 따른 안산시 교육발전 위원회</u>-----.</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6조 (<u>위원회</u>) ----- <u>안산시 교육발전 위원회</u>-----.</p> <p>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 <u>15인 이내</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 도교육위원회위원 1인,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의견을 갖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제9조 (<u>간사·서기</u>) -----</p> <p>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 주관과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p> <p>제1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경비보조 운영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4. 그 밖에 ----- <p>제11조 (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u>『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u>-----.</p>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4. <u>기타</u>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12조 (회의록) -----</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u> -----</p>
<p>제14조 (보조금의 반환 등) ①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3. (생략)</p> <p>4. <u>기타</u>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p> <p>② (생략)</p>	<p>제14조 (보조금의 반환 등) ①-----</p> <p>----- 각 호의 어느 하나 -----</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u> -----</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5조 (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시장에게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4. <u>기타</u>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생략)</p>	<p>제15조 (보고 및 검사) ①-----</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u> -----</p> <p>② (현행과 같음)</p>

안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700
----------	------

제안년월일 : 2008. 7. 7.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1. 수 정 이 유

-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된 일부 규정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함.

2. 주 요 골자

-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 규정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함.
(제1조)

안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비”로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